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29

발의연월일: 2021. 9. 29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상훈 · 김선교

김용판 · 조명희 · 윤창현

김예지 • 이주환 • 성일종

백종헌 · 엄태영 · 이종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(이하 "핵심인력"이라한다)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50%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, 청년·60세 이상인 자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%(청년의 경우 90%)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,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

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·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6 및 제30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6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30조제1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	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	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
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
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	①
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	
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	
과보상기금(이하 이 조에서	
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의 공	
제사업에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4년 12월 31일</u>
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	
기업의 근로자(해당 기업의 최	
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"핵심인력"이라 한다)가	
공제납입금을 5년(중소기업 또	
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	
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	
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	
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	
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	
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	
여 5년) 이상 납입하고 그 성	
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	

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(이하 이 조에서 "기여금"이 라 한다) 부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의 100분의 50 (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 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)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
소득세 감면) ①
<u>2</u> 024년 12월 31
<u>일</u>

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(청년 의 경우에는 5년)이 되는 날(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,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)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(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 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분 할·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 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

한다. --. ② ~ ⑨ (생 략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